

사랑과 신뢰, 번영과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회

# 월간 입법동향

- 2026년 3월호 -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 <b>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b>	
1.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4
2. [개정] 치매관리법	7
□ <b>타 시·도 입법동향</b>	
1. [제정]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10
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12
□ <b>국회입법</b>	
1. [이슈와 논점]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주4.5일제 도입	14
2. [NARS info]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19
□ <b>국외동향 및 시책</b>	
◇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및 행정명령	23
□ <b>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b>	
• 연령 친화도시 및 노인 복지 관련 입법사례 •	
1. [미국 호놀룰루] 호놀룰루 연령 친화도시 조례	32
2. [케냐 마차코스] 마차코스 고령 주민에 관한 조례	35
3. [필리핀 살세도] 살세도 노인 사회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	42
□ <b>유권해석 동향</b>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5건 (광역시·도 1건 / 기초 시·군·구 4건)	45
□ <b>경기도의회 주요 입법예고</b>	
◇ 의원발의 3건(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60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 1 [제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안일 2026. 1. 8.] [의안번호 제2215928호, 2026. 2. 24.,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 ○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자 필수 기반 시설임.

현재 세계 각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기가와트급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부지, 세제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 역시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되고 있어,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입지하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센터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통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등 사항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접수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개시 요청, 관계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 및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 등 간주) 등 일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구축장소, 운영목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부대시설의 설치, 자금 융통·투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인식 제고, 협회 설립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감면 등의 조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제외,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허용 및 「건축법」상 승강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품의 설치의무 적용 예외, 그 밖에 입지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 미래과학협력위원회**
- ▶ **조 례 :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복합 인허가 절차의 일괄처리, 전력공급 특례, 각종 인프라 및 금융 지원 등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데이터센터를 단순 정보통신시설이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 지원, 기반시설 설치, 금융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특징임.
- 법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용수 공급시설, 도로 및 통신 인프라 설치, 장비 확보 지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복합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센터 유치 또는 관련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경기도의 경우 최근 제정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행정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윤리 준수, 행정서비스 지원 등 행정 활용 중심의 규율 구조를 갖고 있음. 즉, 해당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 또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 시설의 구축·유치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조는 아님.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특별법안이 규율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정책 영역은 현행 경기도 조례 체계와 그 규율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된 전력·통신 인프라, 금융 지원, 입지 특례 등은 산업 인프라 정책의 성격이 강한 반면, 현행 조례는 공공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두 제도는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정책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법안이 향후 입법화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는 기존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조례를 직접 개정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산업 기반 조성 정책을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 유치 또는 구축 지원, 관련 기업 및 장비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인프라 연계 지원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은 향후 경기도 산업정책 또는 디지털 인프라 정책과 연계하여 별도의 조례 또는 지원 체계의 형태로 검토될 수 있음.
- 특히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정책을 제도화할 경우 조례를 통한 지원 기준이나 사업 범위 설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법안이 국회 심사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례 제정보다는 입법 동향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데이터센터 유치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확대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는 공공행정 중심의 인공지능 활용 정책과는 별도로, 데이터센터 기반 산업 인프라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개정] 치매관리법

[제안일 2026. 1. 9.] [의안번호 제2215942호, 2026. 1. 12.,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조 례 :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 이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을 위한 위치확인 기능 장치 등 보조기기 지원 근거와, 독거 또는 고위험군 치매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체계를 법률상 명시하려는 데 핵심이 있음. 제안이유에서도 현재 위치추적기 등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안전 확인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입법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 전달체계 전반을 바꾸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치매환자 보호의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실종 예방 및 상시 안전 확인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려는 성격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치매관리법」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시행·지원 의무, 치매환자 가족 부담 완화, 교육·홍보, 시행계획 수립,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 예방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나 홀로 거주하거나 실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치매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은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 목적 외 이용 금지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원 사업 확대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와 안전 확인 방식까지 포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료제공 협조,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위탁, 비용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운영과 광역치매센터 기능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제13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치매환자의 예방·치료와 실종신고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종 대응과 관련한 조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실종신고 이후의 대응 또는 관련 기관 협력 차원의 포괄 규정에 가까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종 예방 보조 기기 지원과 정기적 안전 확인을 직접 사업 대상으로 삼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는 조례의 전면 개정보다는 부분적 보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음. 특히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의 “실종신고를 위한 사업 등”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일정 부분 사업 추진은 가능할 수 있으나, 법률이 새롭게 예정하는 지원 내용은 실종신고 지원을 넘어 사전적 예방 장치 보급과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조례상 지원사업 또는 시행계획 반영사항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음.

○ 조례 개정 방향으로는, 첫째, 시행계획 규정(제5조제2항)에 실종 예방 및 고위험군 안전 확인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현재 시행계획 항목은 치매예방·검진·치료·가족지원 등 일반적 사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 안전 확인 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면 법률 개정 취지가 도의 연도별 계획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

○ 둘째, 비용 지원 규정(제13조)을 중심으로 위치확인 장치 등 보조기기 지원과 전화·방문·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 확인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현재 제13조제2항은 실종신고 관련 협력사업에 관한 포괄 규정이며, 개정법률이 예정하는 사업 내용을 조례상에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치매환자 중 홀로 거주하거나 실종 위험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지원사업을 명시하면, 도 차원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근거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음.

○ 셋째, 이번 개정안은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위치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조례에서도 이를 독자적으로 상세 규율하기보다는 상위법상 보호원칙을 전제로 한 사업 수행 근거를 두는 정도가 적절해 보임. 즉, 조례에서 위치정보 처리의 세부 절차까지 별도로 설계하기보다는,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이 입법기술상 안정적임. 이 경우 세부 집행기준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이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편이 실무상 더 적절할 수 있음.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정기적 안전 확인은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시·군·동·읍·면 등 기존 지역 보건·복지 전달체계와 결합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도 조례 차원에서는 광역치매센터의 기술지원 및 연계 역할을 활용하여 시·군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음. 현행 조례가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자원조사 및 연계

체계 마련,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에 따른 안전 확인 사업 역시 광역 차원의 지원·연계 기능 속에서 운영될 여지가 있음.

- 종합하면, 이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매관리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치매환자의 실종·배회 위험에 대응하는 예방적 보호 기능을 법률상 명시하려는 점에서 경기도 조례에 반영할 실익이 비교적 큰 사안으로 보임. 현행 경기도 조례에도 실종신고 관련 협력사업 근거는 존재하나, 개정안이 규정하는 보조기기 지원과 정기적 안전 확인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 유형에 해당하므로, 향후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시행 계획 및 비용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조례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입법동향

### 1 [제정]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 2. 25.] [부산광역시조례 제7882호, 2026. 2. 25., 제정]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제정이유

재난 경험자 및 유가족의 심리적 외상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의 일상 복귀 촉진과 사회심리적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역할을 규정함(안 제2조)
-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단장 및 위원의 임명·위촉, 임기와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서면심의,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재해구호법」 제8조의2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업무 범위와 구성 기준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해당 조례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기능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 제공 기관 이라기보다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협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심리지원 업무 총괄 및 조정 등을 주요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초기 심리 안정 지원부터 중장기적 심리회복 관리까지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기관, 학회·협회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책 협의 기능과 실무 조정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재난심리지원이 보건·의료, 복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조정 체계를 제도화한 자치입법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입법 사례는 재난 발생 이후 심리적 외상과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심리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심리지원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난안전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별도 조례 제정 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의 구축,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단 구성, 실무협의회 등 운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232호, 2025. 12. 31., 제정]

###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 제정이유

-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농업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동생산·상품화·유통·마케팅 등 조직 및 경영의 규모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 실태조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조직화 및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3은 공동으로 생산·유통·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업경영 효율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해당 조례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공동농업경영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공동생산·공동이용·유통 및 경영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 추진 등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을 도 단위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정책과 공동농업경영체 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조례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 발굴 및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근거, 공동경영 관련 농자재·시설·장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 그리고 정책 추진 이후 성과관리 및 사업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도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동농업경영체의 발굴·육성·지원·관리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입법 사례는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농가 중심의 영농 구조를 넘어 공동경영을 통한 규모화·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농업경영의 조직화 및 공동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 발굴·육성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지원체계 마련, 공동경영 관련 시설·장비 및 교육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공동농업경영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중복이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주4.5일제 도입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441호 (2025. 12. 12.)

주4.5일제는 임금과 생산성, 인력 운영 등 노동시장 전반의 조정이 필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앞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준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5일제 경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근로시간 제도는 법 개정보다 사회적 수용성과 준비가 정착을 좌우한다. 주4.5일제 논의는 제도 도입을 성급히 앞당기기보다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차분히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I. 논의의 배경과 검토 방향

주4.5일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근로시간 논의 가운데 하나이다.<sup>1)</sup>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주4.5일제 도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sup>2)</sup> 이러한 논의 확산은 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현재의 주4.5일제 논의가 실제 도입을 준비할 만큼 성숙한 단계인지, 아니면 기본적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주4.5일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기대와 우리가 뒤섞인 상태이며,<sup>3)</sup> 여론과 정책 현안이 결합되면서 논의가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갖는 제도적 무게,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임금과 생산성·인력 운영·제도 적합성 문제 등 핵심 요소들은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제도 도입의 단순한 찬반 결론이 아니라, 주4.5일제 논의를 어떤 기준과 절차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II. 주4.5일제 도입 의의와 제도적 쟁점

#### 1.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적 의미와 기대

주4.5일제가 논의되는 정책적 맥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회복

1) 제22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4.5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정치권에서 4.5일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유연화(주40시간을 유지하되 배치 유연화)’로 각각 다르다.  
 2)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95번)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주4.5일 지원 시범사업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 추진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3)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주된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나, 경영계는 ‘인건비 등 기업 비용 증가, 생산성 문제 및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노동계는 “임금 보장” 산업계는 “생산성 유지” 관건[유연화 없는 주4.5일제 없다(上)]”, 2025.4.15.

가능성과 일·생활 균형을 높이려는 요구가 자리한다. 근무일을 줄이는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시간 배치 조정과 달리 절대적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 4.5일제 논의는 법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근로일 배치를 조정하는 방식과,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현재 정책과 노동계의 요구는 대체로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주4.5일제의 효과는 조직의 여건, 직무 특성, 인력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산업과 직종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4.5일제의 정책적 의의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 그 실질적 성과는 제도 설계의 정교함과 현장의 수용·준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임금·생산성·인력운영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

주4.5일제 도입 논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조정이 아니라, 노동력 투입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적 변화이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려면 생산성 향상, 인력 재배치, 업무량 조정, 비용 분담 방식 등 다양한 조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sup>4)</sup>

또한 기업 규모와 조직 능력, 인력 운영 여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은 상당할 수 있다. 임금은 사업장의 가장 중요한 비용 항목이며, 노동력 투입 감소가 임금 유지와 동시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 운영 방식의 조정뿐 아니라 상당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주4.5일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임에도, 현재 논의에서는 이러한 전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sup>5)</sup> 정책적 기대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 3. 제도적 정합성과 도입시 조정 과제

주4.5일제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나 근로일 조정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 연장근로 제도, 임금체계, 인사관리 기준, 근무표 운영 방식 등이 모두 상호 연동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휴무일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현재의 근로시간 기록 체계는 대개 주 5일·1일 8시간 근무<sup>6)</sup>를 전제로 구축되어 있어, 금

요일 반일근무·시간단위 조정 등 새로운 형태의 근무일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근태 기록 방식과 시간 산정 규정의 전면적인 정비도 불가피하다.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필요했다. 공공부문은 복무 규정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시간을 단계적으로 조정했고, 금융·운수업 등 연속 서비스 사업장은 교대근무표를 전면 재편해야 했다. 민간 사업장에서도 휴일수당·연장근로 정산 방식, 토요일 근무 폐지에 따른 인력 운영, 유급휴일 부여 기준 등이 순차적으로 정비되었다.<sup>7)</sup>

이러한 경험은 근로일 구조의 변화가 개별 규정의 단순 개정이 아니라, 근로시간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4.5일제 역시 동일한 범주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도입 논의에 앞서 관련 제도들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이 요청된다. 정합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주4.5일제의 필요성과 과제는 보다 선명해지고, 이후 단계의 사회적 대화와 검토 과정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주5일제 경험에서 본 제도 정착의 조건

### 1. 주5일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혼란

한국의 주5일제 도입 과정은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된 주5일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표류하였다.<sup>8)</sup>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도입이 추진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시행 시기와 방식의 불일치가 나타났고,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도입 속도와 조정 방식도 크게 달랐다.<sup>9)</sup>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일제가 법제화된 이후에도 제도는 즉시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도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주도한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유예를 넓게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도입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였다.<sup>10)</sup>

이처럼 주5일제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험은, 제도 도입 그 자

4) 짝이진 근로시간은 오히려 동일한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업무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현, “‘꿈같은’ 주4일제 근무, 모두가 행복해질까”, 한경 CHO Insight, 2025.4.22.

5) 현재 노동시간 단축(주4일 내지 주4.5일제)의 노동생산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연구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연구나 실험은 현재 많이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세브란스 병원의 주4일제 시범 사례 등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노동시간 단축(주4일제)의 노동생산성 효과」, 『월간 노동법률』 2025년 4월호(통권 제407호), pp.28-31.

6)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7) 주5일제(주40시간, 1일 8시간)는 노사정 합의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로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입·시행되었다. 다만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일정 기간 유예를 두어 2011년에 이르러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정비 내용은 당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과정으로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 향후과제로서 검토되고 있던 내용이었기도 하다.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01.9.5., p.26.

8) 주5일제 도입(2003년) 법적 정치과정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정혜윤·이상직, 『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과정: 주요 변화 국면 비교』, 국회미래연구원 기획연구보고서 23-01호, 국회미래연구원, 2023.12.31., p.45 이하를 참조.

9) 또한 일부 업종(금융업, 사무직 중심 대기업)은 주5일제의 도입 이전에 개별 노사합의 등에 따라 먼저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제조업·운수업 등은 여전히 사업 규모 등에 따라 기존 근무방식을 유지하거나 유예되는 경우가 많았다.

10) 중소기업의 주5일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는 순증 인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을 법정 시행시기까지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주5일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 실시”, 2003.11.15.

체보다 도입 이후의 조정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주4.5일제가 주5일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조율을 요구하는 이유

첫째, 주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 폭보다 ‘조정 난이도’가 더 높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주4.5일제의 단축 폭 자체는 주5일제 전환에 비해 작지만, 오늘날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직 운영 방식은 당시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특히 교대근무, 서비스 연속성, 공공부문 운영시간, 근로시간 기록 체계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어, 실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실무적 조정 비용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아직 사회적 합의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 임금과 생산성, 비용 부담 분담 방식은 주4.5일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지만, 노·사·정부 간 명시적인 합의나 실증적 검토가 부족하다.<sup>11)</sup> 기업 규모와 조직 역량의 격차가 큰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동일한 제도 도입이라도 현장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제도 도입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실증 분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산성 영향, 서비스 지연 가능성, 비용 부담 구조, 부문별·규모별 파급효과 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즉, 제도 설계를 위한 ‘준비 단계’ 자체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넷째, 현재 주4.5일제 논의는 여론 관심과 지자체 일부 사례에 기반한 ‘정치적 의제화 단계’일 뿐,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정치권·노동계 일부에서 주4.5일제를 이미 성숙된 정책의제로 다루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사회적 이해와 합의 수준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지금은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단계가 아니라, 그 ‘초입’ 또는 그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결국 주4.5일제는 기술적 조정보다 사회적 합의 형성이 먼저 요구되는 의제임을 알 수 있다.

## 3. 사회적 수용성과 내면화를 통한 정착 필요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보다 더 긴 사회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대화의 목적은 합의를 도출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형성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개인의 일상과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의 기술적 설계보다도 사회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제도 정착의 핵심 조건이 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주4.5일제나 주4일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아직 ‘실험 단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2)</sup>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법 개정보다는 시범사례 축적, 효과 검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결국 주4.5일제 논의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 주장이나 정책 효과의 강조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준비와 논의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하는 일이다. 제도 설계의 완성도는 결국 사회적 논의의 폭과 깊이에 비례하며, 이러한 과정이 확보될 때 주4.5일제 또한 안정적으로 사회에 내면화될 수 있다.

## IV 사회적 대화 기반의 단계적 접근 필요

주4.5일제 논의의 향후 과제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구조를 설계하고,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며, 제도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초 연구와 데이터 축적, 주요 쟁점의 정리, 임금·생산성·인력 운영 구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계·경영계뿐 아니라 중소기업, 필수업무 종사자,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 등 실제 제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논의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제도 도입은 일률적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접근<sup>13)</sup>이 바람직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범위와 절차를 점진적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주4.5일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이를 수행할 논의 구조와 주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현재 경사노위의 의제별 소위원회, 국회 사회적 대화 의제별 협의체 등은 복잡한 노동 의제를 다룰 때 전담 플랫폼을 구성해 쟁점을 정리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사례로서 참고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담 논의 틀을 마련하고, 기초자료 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제도 도입 방식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주4.5일제의 안정적 정착은 도입 시기보다 어떤 구조 속에서 사회적 논의를 조직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달려 있으며, 향후 논의는 이러한 준비 기반을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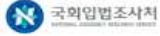
11) 주5일제 도입 논의에서 처음부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 도입 논의 초기에는 임금 삭감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 없이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 임금보전이 핵심 논의가 되었고, 여기에서는 임금보전을 법제화하는지에 대한 이견만 있었을 뿐, 임금보전 그 자체에 대하여는 노·사, 공익 모두 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합의가 결렬된 후 정부 주도 개정 법률에 임금보전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임금보전이 진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에는 논의가 등장한 이래 10년 이상 장기간의 사회적 준비와 논의가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01.9.5., p.22 참조.

12) 프랑스(주 35시간)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해외 사례는 아직 실험 단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진, 『[주4일제⑤] 해외 주4일제 실험, 법제도 추진 과정의 교훈: 노동시간 단축 실험, 법률, 지원의 함의』, 『이슈와 쟁점』 vol.46,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2024.12.3.을 참조.

13)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여 주4.5일제를 일방적인 법 제정 방식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서울경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4.5일제, 법 제화 안 한다””, 2025.10.15.

## ◇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97호 (2026. 2. 13.)



#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

### Overview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은 0~2%로 민간배달앱의 최고 7.8%에 비해 크게 낮다. 그 결과 공공배달앱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상품권 및 정부 소비쿠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외식 비용까지 낮추는 등 공익적 기능이 크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정부가 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배달앱 수수료, 공공 vs 민간



## 공공배달앱 외식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 외식업체

20,000원 짜리 음식 판매 → 최대 1,716원의 수수료 절감

- ▶ 수수료율이 2%이면 공공 배달앱 사용시 민간배달앱에 비해 1,276원 절감
- ▶ 수수료율이 0%면 민간배달앱에 비해 수수료 1,716원 절감



| 배달앱 간 수수료 비교 (음식값 20,000원 가정) |

수수료율	7.8%	6.8%	2.0%	1.7%	1.5%	1.0%	0.0%
민간배달앱	1,716원 <small>* 매출 상위 50% 이상 업체</small>	1,496원 <small>* 매출 상위 30%~40% 이상 업체</small>	440원 <small>* 매출 상위 20% 미만 업체</small>	-	-	-	-
지자체 운영형	-	-	440원 <small>* 대구·세종·부산 * 인천·충청·전남 * 울산(제철·조선) * 전남(국립중앙도서관)</small>	-	-	220원 <small>* 대구(국립미술관)</small>	0원 <small>* 부산(부산시립미술관) * 대전(대전시립미술관) * 전북(전주시립미술관)</small>
민간 협력형	-	-	440원 <small>* 경기도(신촌아트홀) * 강원도(고양아트홀)</small>	374원 <small>* 서울(한남동아트센터)</small>	330원 <small>* 경북(안동아트센터)</small>	-	-

\*음식값 20,000원 가정, 부가세 10% 포함

## 쟁점①: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 이용 감소

▶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 이용은 증가하지만,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 이용은 감소



2022년 대비  
2024년 이용실적

거래액  
**57.6% 감소**  
경기도 '배달특금'  
(1,310억 원-556억 원)

매출액  
**44.9% 감소**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  
(73억 원-40.2억 원)

거래액  
**18.1% 감소**  
대구시 '대구로'  
(631억 원-517억 원)

| 배달앱 간 이용 현황 비교 |

			2022	2023	2024	'22-'24 변화율(%)
지자체 운영형	배달의 명수	매출액(억 원)	73	52	40.2	△44.9
		가맹점(개소)	1,604	1,788	1,471	△8.3
	배달 특금	거래액(억 원)	1,310	951	556	△57.6
		거래 건수(만 건)	429	348	202	△52.9
대구로	거래액(억 원)	거래액(억 원)	631	570	517	△18.1
		주문건수(만 건)	266	231	207	△22.2
민간 협력	방거요 액대비	주문액(억 원)	551	991	1,136	106.2
		거래액(억 원, 경북지역)	262	308	332	26.7

## 쟁점②: 공공배달앱 지원에 따른 지자체·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 ▶ 지자체는 공공배달앱이 0-2%의 낮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비 또는 광고·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음
- ▶ 지자체와 정부는 지역화폐·상품권 및 정부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공공배달앱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매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향후과제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에 과감하게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민간(민간배달앱,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과의 경쟁력 확보

- ▶ 민간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이탈하고, 입점업체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감소로 뒤따라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됨

개선  
방법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 운영자에게 민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율과 권한, 그리고 보상을 부여

- ▶ 공공배달앱이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경쟁력까지 동시에 확보



공공배달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공공배달앱의 자립 기반 강화

- ▶ 공공배달앱은 재정 의존형으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의 절벽을 맞을 우려가 있음

개선  
방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배달앱 지원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지원 방식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 궁극적으로 공공배달앱이 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 구조로 정착확할 수 있도록 유도

# 국외동향 및 시책

## ◇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및 행정명령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5호[통권 제288호] (2025. 12. 16.)

- ◆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법 차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의 입법 방향이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진흥·육성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2025년 1월 행정명령 제14179호를 시작으로 7개의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공포하고, 7월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 등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각 주(州)의 입법례 와도 구별된다.
- ◆ 특히 행정명령 제14179호를 통해 수립된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인공지능 혁신 가속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국제 인공지능 외교·안보 주도라는 3개 중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들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연방 허가의 신속 처리, 미국 인공지능 기술 수출, 미국 과학·안보 플랫폼 구축 정책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적용은 전세계적이며,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 입법은 각국별 개별 사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및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입법 시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관련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주 제 어** 인공지능, 미국 인공지능 정책, 미국 행정명령, 인공지능 행동계획, 오픈웨이트

## I. 들어가며

- 2022년 11월 ChatGPT가 공개된 이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일상의 검색 및 통신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 생활 전체를 변화시키는 혁신적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진흥과 규제를 함께 고려하던 기존 연방정부의 입장과 달리, 인공지능 산업의 규제가 아닌 진흥·육성을 통해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미국이 인공지능의 국제적 표준을 선도한다는 정책을 포함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2025년 1월 23일 대통령 행정명령<sup>1)</sup> 제14179호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방해장벽 제거”를 발표하였고, 이 행정명령에서 ‘미연방 인공지능 행동계획’<sup>2)</sup>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2025년 7월 23일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이하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요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sup>3)</sup>

✓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 제14179호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방해장벽 제거
✓ 2025년 4월 23일	행정명령 제14277호	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
✓ 2025년 4월 23일	행정명령 제14278호	미래 고임금 숙련직 대비 인력 개발
✓ 2025년 7월 23일	행정명령 제14318호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연방 허가 가속화
✓ 2025년 7월 23일	행정명령 제14319호	연방정부 내 편향된 인공지능 방지
✓ 2025년 7월 23일	행정명령 제14320호	미국 인공지능 기술 스택 수출 촉진
✓ 2025년 11월 24일	행정명령 제14363호	제네시스 미션 개시

- 1)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공포하는 명령으로서, 미국의 독특한 연방 법 형태 중 하나이다. 연방 헌법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회 법률의 위임에 의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규정한 연방헌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을 통하거나 또는 행정명령을 공포한 대통령 본인이나 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개정·철회·폐기될 수 있다.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6738>
- 2) 정부의 행동계획(Action Plan)은 통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의 실행 계획을 기술한 것이다. 이번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세 가지 축의 인공지능 정책을 기준으로, 각 연방기관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실행계획’이라고도 한다.)은 대통령 행정명령(제14179호)에 근거하여 마련된 동시에 별도 대통령 행정명령(제14320호 등)을 통하여 행동계획 내 특정 조치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 3)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 원문 및 번역문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외국법률번역DB(<https://lnp.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list.do?isMenu=Y>)에서 확인 가능.

-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들<sup>4)</sup>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진흥·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방의 입법 방향은 인공지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규제하는 미국 각 주(州)의 규제 입법 동향과 구별된다.<sup>5)</sup>
-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후, 2025년 12월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2026년 1월 법 시행 후에는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sup>6)</sup>
-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현실적 사안들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관련 입법 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사항과 산업 동향, 그리고 그에 관한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및 진흥 정책 모두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및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관련 입법 및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I. 인공지능 행동계획

- 2025년 7월 23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정부의 “경쟁에서의 승리: 미국의 인공지능 행동계획”<sup>7)</sup>은 ①인공지능 혁신 가속화, ②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③국제 인공지능 외교·안보 주도를 3개의 중심축으로 하여, 항목별로 권장된 총 30개의 정책 및 총 90여 개의 연방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대표적 정책은 다음과 같다.<sup>8)</sup>

### 1. 인공지능 혁신 가속화

#### ○ 번거로운 규제 제거 및 인공지능 도입 활성화

-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민간 부문이 관료주

의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연방에서든 주(州)에서든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sup>9)</sup> 관련 정책으로 ①연방 관리예산국(OMB)<sup>10)</sup>은 연방기관들과 협력하여 인공지능의 개발·유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규정·규칙·명령 등을 파악하여 개정·폐지한다. ②또한 인공지능 관련 자금 보유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자금 지원 결정 시 ‘주(州)의 인공지능 규제 환경’을 고려하고, 해당 주의 인공지능 규제가 지원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자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한다. ③기업 등이 인공지능 도구들을 신속하게 적용·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국에 규제 완화 샌드박스 또는 ‘인공지능 우수센터’ (AI Centers of Excellence)를 설립한다.

#### ○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 인공지능 장려

- 인공지능 관련 개방형 모델인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Open-Weight)<sup>11)</sup>는 누구나 다운 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가 제공하는 모델이다. 스타트업들은 폐쇄형 모델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정보(sensitive data)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업들은 폐쇄형 모델 업체에 해당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받는다. 관련 정책으로 연방정부가 개방형 모델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 ○ 인공지능 시대의 미국 근로자 역량 강화

- 인공지능 교육 및 인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7호 및 제14278호를 통해 ‘인공지능 리터러시’(AI literacy)<sup>12)</sup> 및 기술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주도 경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재교육하고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 마련하도록 하였다. 권장 정책으로서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세법상 세금혜택(인공지능 관련 훈련 제공 시 고용주에 대한 비과세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 산하에 ‘인공지능 인력 연구 허브’(AI Workforce Research Hub)를 설치하여 노동시장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을 연구하도록 하고, 인공 지능

4)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 세부 항목에만 포함된 행정명령 제14306호 및 쇼아암 치료 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5호는 제외한다.

5) 2024년 이후 최근 미국 각 주에서는 주(州)법률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생성형 인공지능시스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등)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공지능 규제 법률들을 입법하고 있는 추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공지능 투명성법」,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투명성법」, 콜로라도주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투명성 관련 법률 등이 있다. 국회도서관,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68호, 2025.4.

6)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사항,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항,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7)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2025.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7/Americas-AI-Action-Plan.pdf>

8)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7/white-house-unveils-americas-ai-action-plan/>

9)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제14148호(2025.1.20.) 및 제14179호(2025.1.23.)를 통해 기존 행정명령 제14110호(2023.10.30.) 조치 중 미국의 인공지능 우위 유지에 장벽이 되는 조치를 중단·수정 취소하도록 하였다. 행정명령 제14110호(“안전하고 보장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규제 측면도 반영한 바 있다.

1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ttps://www.usa.gov/agencies/office-of-management-and-budget>

11) “오픈웨이트(Open-Weight)”는 학습된 신경네트워크의 최종 가중치 및 편향(biases)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통상 가중치는 공개하지만 오픈소스 모델과 달리 훈련코드나 학습용 데이터셋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https://opensources.org/ai/open-weights>

12) “인공지능 리터러시”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인공지능의 원리·개념·응용 포함)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한계, 의미, 윤리적 고려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사용법을 의미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전 제33548조).

으로 인해 일자리 대체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신속한 재교육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지침을 노동부가 마련하도록 한다.<sup>13)</sup>

## 2.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 ○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

- 반도체 제조시설,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하여 관련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관련 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연방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제 14318호를 발표하였다. 관련 정책으로서 에너지부의 'PermitAI 프로젝트'<sup>14)</sup>의 참여 기관을 확대한다.

### ○ 미국의 반도체 제조기술 재활성화

-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 강화, 공급망 보호가 가능하도록 반도체 제조 산업을 미국 본토로 다시 가져오려는 정책이다. 관련 정책으로 상무부의 'CHIPS 프로그램'<sup>15)</sup>이 있다.

## 3. 국제 인공지능 외교·안보 주도

### ○ 동맹국 및 파트너국 대상 미국 인공지능 기술 수출

-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 표준을 선도해야 하며, 현재 데이터센터 구축 및 모델 분야에서 우위인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적 동맹을 확보한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풀스택'(full-stack)<sup>16)</sup>을 미국의 인공지능 동맹국으로 참여하려는 국가에게 수출하여, 인공지능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맹국들이 전략적 경쟁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게 한다. 관련 정책으로 상무부의 '풀스택 인공지능 수출 패키지'(full-stack AI export packages)<sup>17)</sup>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명령 제14320호에서 규정한다.

13) 미국 노동부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osec/osec20250723>

14) 인공지능의 에너지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시 허가 속도를 가속화하는 노력으로,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연방 허가 절차'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프로젝트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방대한 관련 자료를 학습시키는 방식 등이다. 농무부, 내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이 협력한다.

<https://www.energy.gov/policy/articles/faster-better-permitting-permita>

15)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 대출) 등을 내용으로 한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10/12/2022-22158/implementation-of-the-chips-incentives-program>

16) '스택(Stack)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구성요소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을 포함한다.

17)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컴퓨터 하드웨어(칩, 서버, 가속기),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킹,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라벨링 시스템,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과 그 보안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

### ○ 첨단 AI 컴퓨팅 및 민감한 기술 수출 통제 강화

- 첨단 인공지능 컴퓨팅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이므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 통제 강화를 모색한다. 상무부 주도로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또한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 III.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

### 1. 행정명령 제14179호(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방해장벽 제거)<sup>18)</sup>

-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안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의 '세계적 인공지능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밝힌다(제2조). 2025년 1월 23일 이후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 인공지능·암호화폐 특별보좌관<sup>19)</sup>, 관리예산국장 등이 관련 행정부서장과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제4조).

### 2. 행정명령 제14277호(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추진)<sup>20)</sup>

- 인공지능이 빠르게 현대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유치원 생부터 고등학생(이하 '청소년')까지의 인공지능 교육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평생학습자에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인공지능 리터러시'(AI literacy)와 숙련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명시하였다(제2조).
- 관련 정책으로 '백악관 인공지능 교육 태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sup>21)</sup>를 설립하여,<sup>22)</sup> 제2조의 정책을 시행하고,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제4조). 청소년 및 교사 대상의 '대통령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시행하도록 한다(제5조). 태스크포스는 인공지능 산업조직, 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인공지능 및 컴퓨터과학 교육전문가 단체 등과

18)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EO 14179), 2025.1.23.

19) Special Advisor for AI & Crypto.

20)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American Youth" (EO 14277), 2025.4.23.

21) <https://www.ai.gov/initiatives/education>

22) 해당 태스크포스는 과학기술정책실장(Director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의장이고, 농무부장관, 노동부장관, 에너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립과학재단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 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기본적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르치는 온라인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한다(제6조).

### 3. 행정명령 제14278호(미래 고임금 숙련직 대비 인력 개발)<sup>23)</sup>

○ 국가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요구에 부응하고, 증가하는 숙련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국 근로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인력개발에 연방 투자를 최적화·집중하는 정책을 명시하였다(제2조). ‘종합적 근로자 투자·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 상무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연방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대통령실 관리예산국장 등에게 근로자 지원 전략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에 직장 내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직 근로자의 기술 향상에 투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제3조).

### 4. 행정명령 제14318호(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연방 허가 가속화)<sup>24)</sup>

○ 국가안보, 경제적 번영, 과학계 리더십에 필수인 핵심 제조공정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를 이룰 산업 계획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다.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관련 구동 인프라’(고전압 송전선 등)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1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신규 전력소비가 필요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및 관련 구성요소(송전선, 변전소, 발전시설 등)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이니셔티브(대출, 보조금, 세제 혜택, 구매 계약 등)를 개시하고(제3조), 관련 부지 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며(제7조), 연방 부지 활용을 명시하였다(제9조).

### 5. 행정명령 제14319호(연방정부 내 편향된 인공지능 방지)<sup>25)</sup>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혁신·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밝히고, 각 기관장은 적용법 및 관련 가이드에 따라 ‘편향<sup>26)</sup>되지 않는 인공지능 원칙’(진실 추구 및 이념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개발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만 연방기관에 조달하도록 한다(제3조)

### 6. 행정명령 제14320호(미국 인공지능 기술 스택 수출 촉진)<sup>27)</sup>

○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인공지능의 기술·표준·거버넌스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제1조). 즉 ‘미국산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확대하고, 적대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제2조). 관련 정책으로 상무부장관이 국무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미국의 ‘폴스택 인공지능 수출 패키지’의 개발·유통을 지원하는 ‘미국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을 설립·시행하도록 한다. 설립·시행 시 ‘산업주도 컨소시엄’의 제안을 공모받고, 선정된 제안은 ‘우선순위 인공지능 수출 패키지’로 지정되어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제3조).

### 7. 행정명령 제14363호(제네시스 미션 개시)<sup>28)</sup>

○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미국은 그동안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시행해 왔다(제1조). 이에 인공지능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제네시스 미션’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은 수십년간 미연방 정부의 투자로 개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연방 과학 데이터세트’(dataset)를 이용하는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즉 ‘미국 과학·안보 플랫폼’(American Science and Security Platform)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제3조). 해당 플랫폼은 과학 기반 모델을 훈련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및 인공지능 모델링을 시행하여, 과학·기술 과제 해결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가 제네시스 미션 업무를 담당하고, 에너지부장관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과학·기술 과제(첨단 제조, 생명공학, 핵심 물질, 핵분열·융합에너지,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등)를 식별하며(제4조),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포함하여 관련 기관을 소집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제5조).

## IV. 맺음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진흥·육성에 있어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현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중 우리 입법에서 참조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우리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세부 사항에서 규제 특례 등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23) “Preparing Americans for High-Paying Skilled Trade Jobs of the Future” (EO 14278), 2025.4.23.

24)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EO 14318), 2025.7.23.

25) “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EO 14319), 2025.7.23.

26) 행정명령 제14319호는 다양성·형평성·포용(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관련 이념을 ‘이념적 편향’(ideological biases)으로 언급하고 있다.

27) “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 (EO 14320), 2025.7.23.

28) “Launching the Genesis Mission” (EO 14363), 2025.11.24.

있으나, 신속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해서 각종 절차상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나 신속 절차 샌드박스 제도를 입법 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현직 근로자를 위한 인공지능 관련 재교육을 통한 근로자 역량 강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 등의 사항도 향후 우리 입법 시 반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자료**

- Whitehouse,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2025.7.
- 국회도서관,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68호, 2025.4.

##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 연령 친화도시 및 노인 복지 관련 관련 입법사례 ◇

1

[미국 호놀룰루] 호놀룰루 연령 친화도시 조례  
- Bill 54(2018) - RELATING TO AGE-FRIENDLY HONOLULU

#### ◇ 번역문

#### 의안 54(2018) - 고령친화 호놀룰루 관련 사항

호놀룰루시 및 카운티 주민은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호놀룰루시 및 카운티에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는 연령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특히 고령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계획, 설계, 운영, 유지 관리되는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과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다.

제2조 1990년 호놀룰루 개정 조례 제2장("시장 및 행정기관 추가 권한, 책무 및 기능")을 개정한다. 조례 정리담당관이 조례 체계에 맞게 지정하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

제2-1조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실행계획”이란 2015년 6월 하와이대학교 노화연구센터에서 작성한 보고서 ‘호놀룰루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및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 개정 또는 수정을 말한다.

“고령친화 점검표”란 시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과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시 부서장과 각 부서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과 실행계획의

목표 및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의 이행 현황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친화도시”란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를 장려하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도시 또는 교외 환경을 말한다.

“부서장”이란 행정부 소속 모든 시 부서의 행정 책임자를 말하며, 그 명칭은 어떠하든 관계없다.

### 제2-2조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

(a) 커뮤니티 서비스국에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b)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및 커뮤니티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구상하는 바와 같이 호놀룰루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있다. 이 목표를 향한 초기 단계는 실행계획에 제시되었고 시와 지역사회의 공동 이행위원회가 이를 감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친화도시 개념에 따라 시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과업의 계획, 예산 편성, 설계, 건설, 이행, 운영, 평가를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이끌어 고령친화도시 이니셔티브를 장래에도 지속한다.

### 제2-3조 행정 및 이행.

(a) 관리책임자는 시 직원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지정한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모든 시 부서와 협력하여 시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과업의 계획, 예산 편성, 설계, 건설, 이행, 운영, 평가 과정에 고령친화도시 요소를 장려하고 반영한다.

(b)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고령친화 점검표와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부서의 프로그램 및 과업에 점검표를 적용할 것 부서장은 고령친화도시 모범사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고령친화 점검표를 수시로 갱신한다.

(2) 실행계획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적 달성에 관한 진행 상황을 측정, 평가, 보고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를 마련할 것

(3) 직원이 직무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정책, 원칙, 이행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것

(c) 조례, 법규, 택지 분할 기준, 규칙, 정책, 계획, 설계 지침은 고령친화도시 개념과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해야 한다. 설계 기준, 지침, 기준요건, 설명서는 국가 모범사례 지침을 반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글로벌 고령친화 도시: 가이드’에 제시된 고령친화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서장은 최신 모범사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를 수시로 갱신한다.

(d)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이 조 제(b)항에 따른 고령친화 점검표, 행정 절차,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각 부서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할 것. (2) 관리책임자/대리인 및 호놀룰루 고령친화도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과 대외 소통 계획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할 것. 이미 고령친화 점검표, 행정 절차, 지표를 사용 중인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이를 갱신한다.

(e)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서장은 기존 조례, 법규, 택지 분할 기준, 규칙, 정책, 계획 및 설계 지침을 검토하고, 실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고령친화도시 개념과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며, 이 조 제(c)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갱신 절차를 개시한다.

### 제2-4조 연례 보고.

(a)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각 회계연도마다 부서장은 직전 회계연도 동안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수했는지를 상세히 적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직전 회계연도 중 해당 부서의 고령친화도시 관련 예산 배정액 및 지출액 목록
- (2) 직전 회계연도에 착수한 해당 부서의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과업의 목록 및 그에 반영된 고령친화도시 요소
- (3) 직전 회계연도에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목적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사용한 지표 목록

이 조에서 요구하는 연례 보고서는 현장에 따라 각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b)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지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3조 이 조례는 승인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번역문

**마차코스 카운티 고령자법, 2022**

마차코스 카운티 의회는 고령자의 역량 강화, 보호 보장, 복지 유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고령자 빈곤을 완화하며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목적을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부 총칙**

**약칭**

1. 이 법은 2022년 제정된 「마차코스 카운티 고령자법」이라 한다.

**해설**

2. 이 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란 고령자 지원금을 받는 고령자를 말한다.  
“위원회”란 2012년 제정된 「카운티 정부법」 제57절에 따라 설치된 마차코스 카운티 공공서비스위원회를 말한다.  
“국장”이란 사회복지 및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말한다.  
“카운티”란 마차코스 카운티를 말한다.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이란 사회복지 및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카운티 정부”란 마차코스 카운티 정부를 말한다.  
“지원금”이란 고령자 지원금을 말한다.  
“재가 돌봄”이란 고령자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서, 거주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은 제외하며, 돌봄 제공자가 고령자의 최대한의 안락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담당자”란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내 고령자 관련 업무를 관리하도록 임명한 공무원을 말하며, 카운티 내 고령자 지원금의 관리를 포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고령자”란 60세에 이르고 이 법에 따라 고령자 지원금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 지원금”이란 고령자 또는 고령자의 이익을 위해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목적 및 취지**

3. 이 법의 목적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 (a) 헌법에 규정된 고령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
- (b) 고령자의 지위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
- (c) 고령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

**제2부 고령자 보호**

**고령자의 권리**

4. 모든 고령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고령자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의 일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
- (b) 고령자의 개인적 발전을 촉진하고 소득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고령자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c) 헌법상 보장되는 고령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 (d)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
- (e) 성별 기반 폭력, 방임, 고문, 착취 등 그 밖의 침해에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f)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고령자와 단체를 결성할 권리
- (g) 고령자의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h) 가족 및 국가로부터 합리적인 돌봄, 지원, 보호를 받을 권리

**카운티 정부의 의무**

5.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카운티에서 고령자 관련 국가 정책과 전략을 시행할 것
- (b) 카운티에서 고령자의 돌봄과 보호를 위한 카운티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 (c) 카운티에서 고령자의 돌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것
- (d) 카운티에서 고령자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및 그 밖의 관련자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며, 카운티 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조정할 것
- (e) 고령자에게 세제 감면, 세율 인하, 면세 및 환급을 제공할 것
- (f) 고령자의 재가 돌봄을 촉진하되, 요양원 돌봄은 최후의 수단으로 권장할 것
- (g) 고령자가 공공건물, 교통수단 및 그 밖의 공공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h) 고령자의 소득 창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과업을 마련하고,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고령자 관련 서비스 제공**

6. 카운티에서 고령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a) 고령자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여를 인정할 것
  - (b)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령자의 참여를 촉진할 것
  - (c) 고령자의 다차원적 필요를 인정하고, 그러한 필요의 충족을 촉진할 것
  - (d) 고령자의 발달과 기본 돌봄을 촉진할 것
  - (e) 고령자에 대한 착취 및 학대의 예방을 촉진할 것
  - (f) 가능한 범위에서 고령자가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및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을 권리**

7. 고령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택에서 거주할 권리
  - (b)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 및 지역사회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8. (1)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돌봄과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카운티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자립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예방 및 증진 프로그램
  - (b)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카운티 거주 고령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 프로그램
- (3) 카운티 정부가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a) 카운티 내 고령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카운티 맞춤형 개입을 포함할 것
  - (b) 카운티 내 고령자 돌봄에 관한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고령자 돌봄과 지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
  - (c) 고령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것
  - (d) 카운티 내 고령자에게 영적, 문화적, 의료적, 시민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
- (4) 카운티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센터 및 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마련한다.

**학대 금지**

9. (1) 누구든지 고령자를 학대하거나 고령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도 가해서는 안 된다.
- (2) 신뢰에 기반한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고령자에게 위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해 또는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학대에 해당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학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신체적 학대: 고령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모든 행위 또는 그 위협
  - (b) 고령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c) 심리적 학대: 고령자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양태(다음 각 행위를 포함)
    - (i) 반복적인 모욕, 조롱, 욕설
    - (ii) 정서적 고통을 주겠다는 반복적인 위협
    - (iii) 고령자의 사생활, 자유, 인격, 안전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 (d) 경제적 학대(다음 각 행위를 포함)
    - (i) 법령에 따라 고령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경제적 및 재정적 자원을 박탈하는 행위
    - (ii) 고령자가 필요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제적 및 재정적 자원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행위
    - (iii) 고령자의 동의 없이 고령자에게 속하는 가재도구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실링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둘을 병과한다.

**제3부 고령자 지원금**

**마차코스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

10. (1) 마차코스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를 둔다.
- (2)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 (a) 위원장인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
  - (b) 간사를 맡는 국장인 당연직 위원
  - (c) 카운티 재무국 국장
  - (d) 카운티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신앙 기반 단체를 대표하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
  - (e) 카운티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 단체를 대표하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
  - (f) 카운티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
- (3) 제(2)항 제(d)호, 제(e)호, 제(f)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개 경쟁을 거쳐 선발하며,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임명한다.
- (4) 제(2)항 제(d)호, 제(e)호, 제(f)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3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관보에 게재한다.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의 기능**

11.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고령자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입법, 정책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하여 카운티 정부에 자문할 것
  - (b) 고령자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재원을 조성할 것
  - (c) 고령자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제공할 것
  - (d) 이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지원금 기금의 관리를 감독할 것
  - (e) 고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카운티 의회에 보고할 것
  - (f) 카운티 내 고령자 관련 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를 수행할 것

(g) 이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할 것

###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

12. (1) 각 워드(Ward)마다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를 둔다.
- (2)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 (a) 워드에 통상 거주하며 공공사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령자를 대표하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
  - (b) 워드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신앙 기반 단체를 대표하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
  - (c) 워드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를 대표하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
  - (d) 카운티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
  - (e) 워드 행정관인 위원회 간사 겸 당연직 위원
- (3) 제(2)항 제(a)호, 제(b)호, 제(c)호, 제(d)호에 따른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 위원은 워드 본부에서 위원회가 소집하는 공개회의에서 일반 시민이 추천한다.
- (4) 위원회는 워드 지도부의 지원을 받아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자격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이익집단 포함)가 추천회의에서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한다.
- (5) 이 조에 따라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는 모든 워드의 추천자 명단을 취합하여 승인을 위해 카운티 의회에 제출한다.
- (6) 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관보에 게재한다.
- (7) 제(2)항 제(a)호, 제(b)호, 제(c)호, 제(d)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3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의 기능

13. (1)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고령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워드의 지역사회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동원할 것
  - (b) 워드 차원에서 고령자 관련 사항에 관한 대중 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촉진할 것
  - (c) 고령자의 필요에 대응할 것
  - (d)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검토,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 결과를 카운티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것
  - (e) 워드 차원에서 고령자 지원금의 건전한 사용을 감독할 것
  - (f) 워드의 고령자 관련 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보고를 수행할 것
- (2)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 지도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 고령자 지원금의 재원

14. (1) 연간 카운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 담당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은 예산의 0.2% 이상을 고령자 지원금에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지원금에 배정된 재원의 10%는 행정 운영 목적으로 별도로 책정한다.
- (3) 신청자별 지원금 지급액은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가 수시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원금 수급 자격

15.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고령자 지원금 수급 자격을 가진다.
  - (a) 케냐 시민일 것
  - (b) 마차코스 카운티의 영구 거주자일 것
  - (c) 60세에 이를 것
  - (d) 확인 가능한 부양 수단 또는 소득이 없을 것
  - (e) 유사한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수급자가 아닐 것
- (2) 제(1)항 제(c)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55세에 이른 장애인은 고령자 지원금 수급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3) 제(1)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고령자의 지원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에는 모든 고령자에게 지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정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고령자 지원금 신청

16. (1) 고령자 지원금 신청은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워드 행정관은 고령자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위해 워드 고령자 보호위원회에 상정한다.
- (3) 누구든지 정해진 방식과 서식에 따라 고령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4) 이 조에 따라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5)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a) 신청인이 이 법에 따라 지원금 수급 자격이 없다는 사실
  - (b) 신청인이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
- (6) 담당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 (7)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지원금 신청은 1회만 하면 된다.

### 고령자 지원금의 부정 사용

17.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수급자가 지원금을 부정 사용한 경우, 담당자는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 (a) 지원금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
  - (b) 정해진 조건과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이 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수급자를 대신해 지원금을 수령하고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하도록 할 사람을 지정하는 조치

### 고령자 지원금의 지급 종료

## ◇ 번역문

## 시 조례 제2023-08호

2023년 제정

## 동사무주 살세도 자치단체의 고령자를 위한 자치단체 사회연금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조례

동사무주 살세도 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오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 제목.** 이 조례는 동사무주 살세도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사회연금 조례”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무조건 현금이전 제도에 따라 사회연금을 받는 고령자 수급 인원을 확대한다.
2. 살세도 자치단체에서 수급 자격이 있는 고령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동사무주 살세도 자치단체의 수급 자격이 있는 모든 고령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a. 자치단체 사회연금: 사회복지개발부의 사회연금 또는 정부 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250.00페소의 수당
- b. 고령자: 살세도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고령자사무국을 통해 자치단체 사회복지개발사무소에서 이를 확인한 사람
- c. OSCA: 고령자 관련 프로그램, 과업, 활동의 조정을 담당하는 고령자사무국
- d. 대리 수령자: 수급자를 대신해 행위할 법적 권한이 있거나 실제로 수급자를 보호, 양육하는 대리인으로, 수급자 또는 바랑가이장이 발급한 문서로 이를 증명한 사람
- e. 고령자 데이터베이스: 고령자사무국에 설치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개발사무소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 f. 연금 수급자: 사회복지개발부, 정부서비스보험공단,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연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연금을 받는 사람

**제5조 자격.** 자치단체 사회연금 수급 자격은 살세도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해당

18. (1)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령자에게 또는 고령자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의 지급을 종료할 수 있다.

- (a)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고령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카운티에 부재한 경우
  - (b) 허위 진술, 기망, 사기 또는 중요한 정보의 미공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c) 이 법 및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 (d) 착오로 지원금이 승인되고 지급된 경우
- (2)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이 신청인이 제시한 사유가 지원금 재개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고령자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고령자 지원금의 소멸**

19.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지원금은 소멸한다.

- (a) 사망한 경우
- (b) 거주 시설에 입소한 경우

**고령자 지원금 지급**

20.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은 지원금을 수급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며, 지급 방식에는 모바일 머니 송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부 기타 규정****일반 벌칙**

21. 이 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는 경우, 100만 실링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그 둘을 병과한다.

**규칙**

22. (1) 카운티 집행위원회 위원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의 규정을 더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 (2) 제(1)항의 일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규칙은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a) 고령자 지원금 신청 절차
  - (b)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서식
  - (c) 고령자 지원금 지급 조건
  - (d) 이 법을 완전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바라가가이 고령자 협회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개발부 연금을 받지 않고 정부서비스보험공단 또는 사회보장제도 연금 수급자가 아니며 그 밖의 정부 연금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구비서류.** 고령자 또는 대리 수령자는 다음 서류를 고령자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a. 출생증명서
- b.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에 한함)
- c. 바라가가이 발급 거주증명서

**제7조 시행.**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관실은 고령자사무국을 통해 이 조례의 규정을 시행하고, 연령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관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 규칙 및 시행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연금 수급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한다. 각 바라가가이의 고령자 대표는 자치단체 사회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적격 고령자를 고령자사무국에 추천하고 이를 확인 요청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치단체 사회복지개발사무소는 고령자사무국을 통해 살세도 자치단체의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 시행 규칙 및 규정.** 수당은 분기별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며, 자치단체 재무국이 현금 선지급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치단체 사회복지개발담당관의 건의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청구인이 건강상의 사유로 직접 출석하거나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수령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 사회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수당은 수급자가 실제로 생존했던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월 수 산정에서 16일의 단수는 1개월로 간주한다.

**제9조 예산 배정.** 당해 연도에 승인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으며, 이후 연도에는 연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월 수당 또는 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 또한 살세도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예산 가용 범위에서 지방재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조례로 월 수당 또는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고령자사무국은 연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 배정을 위해 지원 대상 또는 지원 예정 고령자 명단을 자치단체 사회복지개발담당관실에 제출한다.

**제10조 벌칙 규정.** 이 조례의 규정을 태만히 이행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령, 규칙, 규정에 따라 행정상 책임을 진다. 벌칙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의 추궁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1조 분리 규정.** 이 조례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개정 규정.** 이 조례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 조례와 상충하는 다른 조례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명시적으로 개정한다.

**제13조 시행 규정.** 이 조례는 잘 보이는 장소 2곳에 게시하고 일반 유통 매체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시행한다.

## 유권해석 동향

###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연번	질의기관	질의내용	회신일	페이지
1	충청남도 당진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6. 1. 28.	46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의3 제3항 관련)	‘26. 1. 20.	49
3	충청남도	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등 관련)	‘26. 1. 12.	51
4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등	‘26. 1. 12.	53
5	경기도 화성시	시장으로 하여금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3일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6. 1. 8.	57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 의견26-0025 / 요청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회신일자 2026. 1. 28.]

####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2. 16. 의견제시 25-0319 참조).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볼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또는 그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지방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은 비공개대상 정보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⑫ (생략)

**2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8조의3제3항 관련)**

[안건번호 : 의견25-0434 /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2026. 1. 20.]

**◇ 질의요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절차 또는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에서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6. 22. 의견제시 22-0176 참조).

그리고,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은 본회의, 임시회 등의 개최,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회의규칙에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직무대리, 회의 개최, 질서유지, 의안의 심의 순서, 회의록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5. 9. 27. 의견제시 25-0307 참조).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방식(지방의회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외에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관련되는 후보 등록이나 관련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입법형성의 자유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6. 22. 의견제시 22-0176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래의 검토안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법제처 검토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의3(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일 당일 본회의 개의 ○○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의3(후보자등록 등) ①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의장 후보자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의 시작 ○○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 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통합하고 문구 등을 수정

③ 등록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없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문구 수정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3 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5-0435 / 요청기관: 충청남도 / 회신일자 2026. 1. 12.]

**◇ 질의요지**

- 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 의견**

-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충청남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도지사가 교육운영 성과,

시설·환경, 강사진, 교육과정 등이 우수한 기관을 심사하여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제4조), 프로그램 개발 및 종사자 교육·연수 등을 지원함으로써(제6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보건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등 관계 법령에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그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5. 7. 9. 의견제시 25-0196, 법제처 2024. 8. 29. 의견제시 24-0293, 법제처 2015. 1. 13. 의견제시 14-0289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충청남도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등

[안건번호 : 의견25-0417 /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 2026. 1. 12.]

◇ **질의요지**

- 가.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 나.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각 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4. 2. 8. 의견제시 24-0016 참조).

먼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광산구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에서는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단서 및 제1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민간위탁 사무가 특정 수탁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민간에 행정 참여 기회를 골고루 배분하되, 해당 사무를 위탁할 새로운 법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에게도 기회를 주어 행정의 간소화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에도 광산구조례 제10조제4항단서 및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사유는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 및 공개모집에 응모자가 있었으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산구조례 제10조제4항제1호의 문언에 충실하게 살펴볼 때,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어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한 경우라면 광산구조례 제10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나, 응모자가 있었으나 유찰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귀 기관이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가 있었으나 유찰된 경우까지 포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셔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시

제00조(수탁자 선정) ③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〇〇시 〇〇조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 할 수 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 해석상 의문의 소지가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집행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광산구조례 제10조제4항의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자가 없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몇 번째 공개모집까지 응모자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배분과 행정의 간소화 실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입법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 24. (생략)
- ④ ~ ⑥ (생략)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이 30%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 등
-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약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5 시장으로 하여금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3일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 의견25-0427 /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2026. 1. 8.]

◇ **질의요지**

- 시장으로 하여금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3일의 노부모부양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7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그리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사유별로 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특별휴가 사유별 휴가일수 외에 다른 특별휴가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3. 8. 의견제시 24-0053 참조).

한편, 복무규정에서는 특별휴가의 하나로 제7조의7제9항에서는 공무원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규정(각주: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 하면서, 제4호에서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화성시 조례안”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려는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가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에서 규정하는 ‘가족돌봄휴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휴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 조례안에 따른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와 관련하여 휴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복무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대상이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로 그 대상과 연령을 제한하고 있고,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노인요양복지시설에 진료를 받거나 입소하는 경우 등 휴가를 사용하는 사유도 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 조례안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는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4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와는 다른 휴가 사용 대상과 사유를 규정하는 점에서 볼 때, 복무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한 성질의 특별휴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화성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는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 ① ~ ⑦ (생략)

- ⑧ 공무원은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⑧ (생략)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 ⑩ ~ ⑮ (생략)

## 경기도의회 주요 입법예고

- 의원발의안 3건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 ■ 제정조례안

#### 1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6. / 발의자 : 이재영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 ◇ 제정이유

-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2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5. / 발의자 : 유호준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 개정조례안

### 1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6. 3. 3. / 발의자 : 유호준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개정이유

- 가.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나.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와 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예상됨.
- 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개 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상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로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9조).

## 월간 입법동향

□ 발행월 : 2026년 3월

□ 발행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법 제 과 장 박 경 순

법제운영팀장 김 호 성

입 법 조 사 관 유 승 규 황 대 석

심 지 연 김 흥

□ 연락처 : 031-8008-7285 (fax. 031-8008-7289)

※ 본 자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http://www.ggc.go.kr))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월간입법동향 페이지에서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